

# 「인천운서 SK VIEW skycity」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홈페이지 게시용)

- 문서번호: (주)SK건설 SK운서-2019-002(2019.09.30.)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27세대(예비추천자 포함)

지구 (공급 유형)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추천자	비고
소계	17	10		
민간분양	77A	3	2	
	77B	3	2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917일대 (영종하늘도시 A8-BL)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19.10.31.(목)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 032-569-115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3
	84A	8	4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4B	1	1	
	84C	2	1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m<sup>2</sup>)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19.10.14\)](#)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9.10.4.\(금\) ~ '19.10.14.\(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택 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 · 초본("주민등록번호", "세

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별 최근 10년내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지방세(재산세 항목) 미과세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제출 미해당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9.30) → 읍면동 신청·접수(10.4~10.14)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10.15~10.16) → 접수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10.17)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0.18)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10.21) → 인터넷청약접수 (11.5)

<서식 1>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인명		장애정도 (중복유무)		장애인등록일	
세대원 중 장애인 (신청자 제외)		유( ) / 무				
세대원수			65세이상 장애인 (신청자 제외)	유( ) / 무		
총 무주택 기간			장애인등록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신청구분	지역	분양		단지 및 신청형별		
		임대				
특기사항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2019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 무주택 서약서

본인은 경기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세대가 전원 무주택이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함	신청자와 관계	세대원 주민번호
	본인	
	배우자	
	자녀	
	손주	
	며느리	
	사위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무주택은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분양권등은 2018년12월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후에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으로 간주  
(그 이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 <서 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세대원 구성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관리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신청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상기 신청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၁၅၁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4> 주택 알선 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

평점요소	신청인	점수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신청자 장애정도	( )	( )점	중증(중복)	20	단, 지적장애·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중증(단순)	17	
			경증(중복)	12	
			경증(단순)	9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년	( )점	10년 경과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등록일로부터 세대 전부가 무주택인 기간</li> <li>신청자거주 책임</li> </ul>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2년 미만자	0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명	( )점	세대원 중 장애인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 미포함</li> </ul>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	5	
세대원 구성	( )명	( )점	5인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 포함</li> </ul>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년	( )점	5년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지역 해당 시군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u>ex) 수원시 건설 아파트 신청시 수원시에 현재 몇 년 거주하고 있는지?</u></li> </ul>
			4년 이상	12	
			3년 이상	9	
			2년 이상	6	
			1년 이상	3	
			1년 미만	1	
			거주기간 없음	0	
최종점수			( )점		

본인은 우선순위 배점기준작성에 있어 허위사실없이 정확히 기재하였으며,  
최종점수에 이의가 없음을 서명합니다.

성명

(인)

확인자

주민센터

담당자

주무관 (인)

## <작성요령>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작성요령**

#### 1. 장애정도 : 기준일(신청현재 장애정도(중복장애는 종합장애정도 기준)

- 예시1 : 중복장애(시각 경증, 지체 경증)합산 후 종합장애 경증이면 경증(중복)인 12점 해당
- 예시2 : 중복장애(시각 경증, 지체 경증)합산 후 종합장애 중증이면 중증(중복)인 20점 해당

#### 2. 장애인등록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 가, 나, 다 모두 포함하는 기간

가. 최초 장애인등록일

나. 무주택기간 : 주택 매각시점부터 현재(연속된 기간, 전 세대원 포함)

다. 신청자가 만19세가 된 시점

- 예시1 : 동일세대인 신청자 장애등록일(02년)이고 만19세(06년) 아버지가 주택 매각(10년)하면 무주택 세대구성원기간 총 9년(19년 현재)
- 예시2 : 동일세대인 신청자 장애등록일(02년)이고 만19세(06년) 아버지가 주택 매각(10년)하면 무주택 세대구성원기간 총 9년(19년 현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다 세대분리가 되어도 이전 세대구성원 기간 인정

- 예시 : 85년부터 동일 세대 아버지(유주택, 아들(세대원)) → 아들 04년에 장애등록 및 만19세(04년) → 09년에 아들(세대주), 배우자가 세대분리한 경우 세대구성원 기간 15년(19년 현재)

####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신청자 제외

####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신청자 제외, 3번 항목과 중복 합산

- 예시 : 세대주 신청자(장애, 66세), 아버지(장애, 92세), 어머니(비장애, 88세), 아내(장애, 63세), 여기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항목은 아버지, 아내가 해당(10점),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항목은 아버지만 해당(5점)

#### 5. 세대원 구성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수(신청자 포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장애인 본인)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첨부)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부모, 조부모, 시모, 장인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자녀, 손자, 외손자, 사위, 며느리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배우자가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 등

**다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집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은 무주택 간주 및 세대원 수에서 제외**

-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매각한 경우 매각시점 이전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세대원에도 포함

#### 6.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장애등록일부터 특별공급 해당 시

(현재 주민등록 기준, 세대구성원 여부 무관)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ex) 수원시 건설 아파트 신청시 수원시에 현재 몇 년 거주하고 있는지?

수원시→성남시→수원시와같이 불연속한 경우 마지막 거주기간만 인정

### <서식5>

# 위임장

### ( 대리인 )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주소 :
  - 위임자와 관계 : 위임자의 ( )

장애인특별공급(분양·임대)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일체에 대하여 상기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함.

( 위임자 )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주소 :

2019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참고자료 1>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단, 임대주택은 제외)  
- 상기 내용에 따른 무주택 소명자료는 반드시 대상자발표 전날까지 제출해야 인정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유의사항**

### **□. 협조사항**

- 가. 시·군 및 읍·면·동에서는 접수 일정 안내 및 홈페이지 · 게시판 등을 통해 필히 홍보
- 나. 신청 및 배점표의 모든 기준은 10월 14일(신청일 기준)까지로 함
- 다. 배점 기준, 제한자 및 접수 등 철저히 확인 후 기한엄수 제출
- 라. 무주택서약서 작성 시 서약서 내용을 숙지시킨 후 자필 서명받기(대인작성 시 위임장 첨부)
- 마. 신청자 주민등록표등 · 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 입일/변동일/변동사유" 가 반드시 모두 표기된 것을 징구 바람
- 바. 신청서, 서약서 등 신청관련 서류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 사.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도 안내문 탑재
  - 경로 : 가족/복지/보건(초기화면 좌측중간) → 06 장애인복지 → 공지사항

### **□. 안내 사항**

- 가.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 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 다. 신청 접수 시 공급유형 및 평형을 정확히 안내하고, 신청형을 정확히 기재
- 라. 공급가격(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
- 마.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을 대상자에게 안내
- 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으로 주택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음을 안내
- 사.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아.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 기 신청자 확인은 신청자 본인이 [www.apt2you.com](http://www.apt2you.com)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봄으로써 알 수 있음. 기관에서는 확인 불가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 Q1. 신청자격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세대’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여부 판단시 분양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으로 간주되며 개정 전 취득한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 Q2. 주택 소유 여부 확인대상자의 범위는 세대원 범위와 동일한가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신청자격과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의 범위가 동일함을 알려 드립니다.

- 추후 건설사에서 요청시 구비서류 다시 제출하셔야 함.

### Q3. 장애인 세대구성원은 타 시도에 거주하지만, 배우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장애인 세대구성원은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므로, 이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도 장애인이여서 세대구성원으로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신청자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적장애 · 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장애인 세대원과 함께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Q4.

신청서에 무주택기간을 실제보다 길거나 짧게 기재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길거나 짧게 표기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른 배점항목도 마찬가지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게 되면 해당 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부적격자가 추천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우리 도의 추천여부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LH공사 등 공급처에서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적격자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분이 무주택 사실을 주장하며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장접수일에 청약절차까지 마친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로 분류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Q6.

경기도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후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에서는 09년도부터 특별공급 선정자가 청약 접수 등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고득점 장애인의 독점을 막고자 선정 후 5년동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특별공급 선정자가 접수 포기 후에도 예비 추천자에게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기에, 추천 후 계약을 맺지 않은 분께 5년동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제한하였던 사항을 ‘18.8월 1일부터 해제하였습니다.
- 다만, 경기도에서 특별공급 기관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터넷 청약접수일에 인터넷청약접수를 하게 되거나, 건설사를 방문하셔서 현장 접수를 하시면, 금융결제원에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추후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함

Q7.

예비추천자의 경우에 인터넷 접수를 꼭 해야 하나요?

---

- 예비추천자로 선정된 후 당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원하는 경우 : 인터넷청약접수일에 접수를 하셔야 추후 추첨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예비추천자로 선정된 후 변심 등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을 원하는 경우 : 꼭 인터넷청약접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다른 아파트 신청 가능
- 예비추천자가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하신 후 당해 아파트를 공급 받지 못한 경우 : 추후 다른 아파트 신청 가능

※ 예비추천자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중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공급 신청자보다 우선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의 40% 이상을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